한국선진화포럼
KFProgress.org

제도의 현황

○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설립은 2010년부터 허용하되 정부(노동부장관)는 이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사항을 2009년 말까지 강구한다.

○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2010년부터 금지한다.

※ **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** <제정 1997.3.13>

제24조 (노동조합의 전임자) ① …

② …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(이하 "전임자"라 한다)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81조 (부당노동행위)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부당노동행위"라 한다)를 할 수 없다.

1~3. ……

4. …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…하는 행위. …

5. …

부칙 제5조 (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…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. <개정 2001.3.28; 개정 2006.12.30>

② …

③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3.28; 개정 2006.12.30>

부칙 제6조 (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) ①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(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)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1.3.28; 개정 2006.12.30>

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,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. <개정 2001.3.28>

한국선진화포럼
KFProgress.org

공익위원 합의안 요지

- 2009. 7. 2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-

◆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

○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

-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한다.

○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

-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.

○ 교섭대표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.

○ 조합원 수 확인, 선거 실시 등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업무는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
◆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방안

○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

-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.

  ·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
  ·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
  ·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
  ·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
  · 법원,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
  ·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

○ 정부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- 이에 노·사·정은 정부재원의 규모, 전달체계, 운영방식,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.

토론회에서 논의할 주요 논점

- 사회자 작성 -

1. 기업 단위에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는지?
2.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?
3.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한지(자율교섭에 맡기면 안 되는지)? 교섭창구 단일화 이외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는 방안은 무엇인지?
4.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'과반수 교섭대표제'(공익위원 합의안)는 지지할 만한지? 어떤 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한지? 더 좋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무엇인지?
5.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해야 하는지(노사 자율에 맡기면 안 되는지)?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은 무엇인지?
6. 전임자 급여에 관한 '타임오프제'(공익위원 합의안)는 지지할 만한지? 어떤 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한지? 더 바람직한 방안은 전임자 급여 해결방안은 무엇인지?